

# 주식회사 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## 2023년 제5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주식회사 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.

1. 일 시 : 2023년 06월 30일(금) 오후 4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(삼성동, 아셈타워) 대한토지신탁(주) 회의실
3. 출석주식수 : 총 발행주식수 2,372,500주 중 2,372,500주
4. 출석주주수 : 총 4명 중 4 명

의장인 대표이사 박희성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총 발행주식수의 100%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,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이어 의장은 다음과 같이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# ■ 제1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의장은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하고,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서면결의서 포함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#### ○ 변경 전후 정관 대조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57조 (주주 보호에 관한 사항) 신설	<p>①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·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
제58조 (주주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등) 신설	<p>① 회사의 임원은 자산의 투자·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</li><li>2. 자산의 투자·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li><li>3.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행위</li></ol> <p>② 회사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

의장은 금일 상정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  
(폐회시간 : 오후 4시 30분)

위 의사의 결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들은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다.

2023년 06월 30일

주식회사 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 표 이 사      박희성

